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할 목적으로 1957년 6월에 설립되었다.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채인수 등을 행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설치하려는 구상은 1948년에 지방재정위원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중앙공고」안이 처음 제창되었다. 그후 1954년에는 공모채의 소화 문제에 중심을 둔 「지방채증권공고」 구상이 검토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56년에 이르러 지방제도조사회의 답신을 계기로 공고의 설립구상은 지방채전반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공영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관계하는 지방채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논의가 전환되어 1957년3월 31일에 「공영기업금융공고법」을 가결하여 동년 6월 공고가 설립되게 되었다.

동법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정부기관인 자금운용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금운용부는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일반채를 인수하고 공고는 공기업에 관한 공모채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고의 명칭도 「공영기업금융공고」로 하였다.

지방분권이 진전되는 가운데 지역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사

회기반정비를 위하여 양질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공고는 재정투융자의 개혁 등 공적금융을 둘러싼 정세변화에도 적절히 적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장기이면서 저리의 자금의 용통에 노력하면서 자치단체를 위한 공동자금조달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나. 공고자금의 특징

1) 대부자금의 특징

공고의 대부자금은 자금량의 풍부, 정부자금에 이어 두 번째의 저리자금, 그리고 대부기간이 매우 장기적이라는 점과 민간자금에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유리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풍부한 대부자금을 들 수 있다. 지방채계획에 있어서의 공고의 대부계획액은 증장기에 걸쳐 사회자본정비의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1979년 이후 매년 1조엔 규모로 증가되고 있으나 1992년도부터 대폭적으로 증액되어 1993년부터는 거의 2조엔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1999년 현재 장기대부잔고는